

1. 개정이유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739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지등의 행위제한 시 행위 신고 서식 마련(안 제58조의2)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서식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사전검토 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
(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2에 따른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 제40호의3
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3 중 “별지 제40호의3서식”을 “별지 제40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 제40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0호의3서식을
별지 제40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

※ []에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행위허가 (신고)내용	[] 건축물의 건축 등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위치			
	면적(㎡)			
	근거 법령			
	허가일자	년 월 일	허가권자	
	공사(사업) 진행상황	공사 진척도 % ※ 공사(사업)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광진흥법」 제5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사업) 진행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관광진흥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사유지 매수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지 면적	○ 전체면적 m ²		
	－ 국유지・공유지 면적 m ²		
	－ 사유지 면적 m ² (취득면적 m ² , 잔여면적 m ²)		
토지의 활용계획			
토지매입 시기	. . . ~ . . .		

「관광진흥법」 제5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 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 및 지번 1부 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사업시행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	---	-----	---	-----	---	-----	---	-----

요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개발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시설의 종류			
사업지 면적			
토지의 활용계획			
토지매입 시기	.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라 조성사업용 토지매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매입계획서(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및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를 포함합니다) 1부 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합니다)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 토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결 정	→	승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u>별지 제40호의2서식</u>의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u>별지 제40호의3서식</u>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u>제58조의2(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u>는 <u>별지 제40호의2에 따른다.</u>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 ----- -- <u>별지 제40호의3서식</u>-----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 ----- ----- <u>별지 제40호의4서식</u>----- ----- -----